

답변서

우편제출

사 건 2016재나905 기타(금전)
원 고 임그루
피 고 케이티노동조합

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재심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1.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1.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
이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3. 3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위원장 정윤모



7032



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귀중